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안
<p>제1조의 2(정의) ① 법 제2조의 제2항 제3호의 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2조 제8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p>	<p>①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자로 하고, 건설업, 엔지니어링업, 소프트웨어업, 설계업의 경우는 연간매출액의 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자를 말한다.</p> <p>별도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다.</p> <p>② 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한 기준을 갖춘 등록업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종 의한 등록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의한 등록업자 4.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에 의한 등록업자 5. 폐기물관리법 제21조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제38조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업자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에 의한 등록업자 10. 기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p> <p>본문. 생략</p> <p>1~3. 생략</p> <p>4. (신설)</p> <p>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p> <p>① 생략</p> <p>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말한다.</p> <p>본문.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p> <p>5. 공사에정가격의 85/10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